

##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8. 25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8. 25

##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9. 2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진표)

## 가. 개정이유

-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시 직영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되는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
-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처리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## 나. 주요골자

- 자원봉사센터 설치업무 중 센터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하는 규정 삭제(안 제5조제2항)
-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(안 제7조제2항)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탁을 하면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탁해도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은 아님. 시에서 필요시 감독함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8조제3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시의회 의원을 지역주민 대표로 바꾼 이유는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주민 대표에 시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임</li> </ul>

## 4. 토론요지

## 가. 찬성토론

- 없음

## 나. 반대토론

- 없음

## 5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 참조

## 6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## 7 소수의견요지

-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의원을 위원으로 해야 함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##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368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9. 2

제출자 : 행정복지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-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, 봉사단체의 지원·육성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이 있음
- 위원은 관련 공무원 외에 시민의 대표자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여러 계층의 분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시의원을 삭제하고 대신 지역주민 대표로 바꾸려는 것은 시민의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
- 따라서 위원구성 중 시의회 의원 2명 내외 내용을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골자

- 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“지역주민 대표”를 “시의회 의원 2명 내외”로 수정

###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3항 내용 중 “지역주민 대표”를 “시의회 의원 2명 내외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구성 및 기능) ①(생략)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	제8조(구성 및 기능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	제8조(구성 및 기능) ①(개정안과 같음) ②(개정안과 같음)

<p>③ 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 약간명, 시의회 의원 2명 내외,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교수나 민간인 8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③ ..... 덕망이 있는 교수 및 지역주민대표, 교육계 인사, 유관단체인사, 관련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③ ..... 덕망이 있는 교수 및 시의회 의원 2명 내외, 교육계인사, 유관단체인사, 관련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
---	--	---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운영)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회 구성은 덕망이 있는 교수 및 시의회 의원 2명 내외, 교육계인사, 유관단체인사, 관련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	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
제5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 ①(생략)	제5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

②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두고 유플리케이션으로 전문지도자,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임무, 자격요건, 처우, 배치인원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운영)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센터의 운영을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.

#### 제8조 ①(생략)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 약간명, 시의회의원 2명 내외,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교수나 민간인 8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.

#### ④ 및 ⑤(생략)

#### 제9조 ①(생략)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센터 소장을 겸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12조 ~ 제14조(생략)

#### ②(삭제)

제7조(운영) ①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특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범인에게 센터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.

#### 제8조 ①(현행과 같음)

②.....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③..... 덕망이 있는 교수 및 지역주민 대표, 교육계인사, 유관단체인사, 관련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#### ④ 및 ⑤(삭제)

#### 제9조 ①(현행과 같음)

②.....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12조 ~ 제14조(삭제)